

평창군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21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6. 4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동 조례 설치 근거인 「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」이 2008.3.28. 폐지됨에 따라, 상위법령 폐지로 실효성이 없어진 「평창군기반시설 부담금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평창군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(2016. 1. 7. ~ 1. 27.) 결과, 제출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 : 규제사무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
4) 법제심사 : 원안동의

평창군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

평창군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) ① 이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되

는 「평창군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조례」의 채권·
채무 등 모든 권리·의무는 평창군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한다.

② 평창군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평창군 일반회계에
속한다.

관계법령 발취

□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

[법률 제9051호, 2008.3.28., 폐지]

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.

부칙 <법률 제9051호, 2008.3.28.>
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일반적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부과하였거나,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 (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4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제113호를 삭제한다.

②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1항제3호, 제34조제1항제15호, 같은 조 제2항제3호, 제35조제1항제4호, 같은 조 제2항제13호 및 제35조의2제2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.